

2009. 2. 2. (목)

제157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  
( 제 2 차 본 회 의 )

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 
[ 심 사 보 고 서 ]

총 무 위 원 회

## 【목 차】

1.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..... 2
2.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 5
3.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..... 8
4.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12

# 〔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02. 13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: 2009. 02. 25.

라. 의안번호 : 제2009-1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더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2)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-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어려운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-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3)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4)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  -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  -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  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  -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  -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5)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거창군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군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- 6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〔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02. 13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: 2009. 02. 25.

라. 의안번호 : 제2009-2호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7조).

○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(안 제1조)

→ 「지방재정법」 제116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

○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련 조문(안 제7조)

→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 ⇒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

2)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.(안 제4조)

○ 재정보증 한도액을 “110만원 이상”에서 “1천만원 이상”으로 조정

3)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(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).

○ (지방)자치단체장 등 ⇒ 군수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 · 제3항, 제6조, 제7조제1항 · 제3항, 제8조제2항)

○ 의하여(한) ⇒ 따라(른) (안 제1조, 제3조제3항, 제4조, 제5조, 제7조제3항)

○ ~이라 함은 ⇒ ~이란(안 제2조)

○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2조)

○ 이외 ⇒ 외(안 제2조제2호)

○ 당해 ⇒ 해당(안 제6조, 제7조제1항 · 제2항)

○ 기타 ⇒ 그 밖에(안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)

○ 중복되어 표현이 어색한 “이름”을 삭제(안 제6조, 제8조제2항)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02. 13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: 2009. 02. 25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9-3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,
-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### 1)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.(안 제1조)

- 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 → 수승대관광지
-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 →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

### 2)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“관광지” 및 “관람료등”의 약칭을 사용함.

- 관광지 → 수승대관광지(이하 “관광지”라 한다) (안 제2조)
- 관람료등 →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등”이라 한다) (안 제8조제1항)

### 3) 관람료의 징수시기와 관련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.

- 성수기 :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(안 제4조제6호 신설)
- 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(안 제4조제7호 신설)

### 4) 관람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.

- 관람료는 관리사무소(직원이 직접 취급하는)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,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(안 제6조제1항)

### 5) 관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와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(안 제8조제1항제6호, 제11조제2항)

- 장애인수첩 → 장애인등록증(「장애인복지법」)
- 「지방재정법」 →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### 6)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.

- ~의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→ ~에 따라(른)
- ~의(에) 정하는 → ~로(에서) 정하는

- ~에 의한다 → ~에 따른다
- ~의 정의는 → ~의 뜻은, ~(이)라 함은 → ~(이)란
- 아니한다 → 않는다
- 그러하지 아니한다 → 그렇지 않다
- 기타 → 그 밖에(의), 이외 → 외
- 관광지내 → 관광지 안
- ~할 때에는 → ~하면
- 붙일 → 부칠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조례안은 군의회의 군정질문(07. 3. 20)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승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(관람료)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이용료(주차장, 썰매장 등)는 계속 징수하되 관람료는 세입결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피서 성수기인 7 ~ 8월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기간에만 관람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※ 관람료 징수실적(6년간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| 2003년  | 2004년  | 2005년  | 2006년  | 2007년  | 2008년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관람료 | 51,950 | 49,351 | 58,034 | 61,881 | 60,990 | 68,188 |

- 피서 성수기(7~8월)에 연간 관람료 수입의 75~79% 징수

-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, 또한 수승대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피서 성수기인 7 ~ 8월에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02. 16.
- 나. 제 출 자 : 강창남의원 외1명
- 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: 2009. 02. 25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9-6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676호, 2007. 12. 14)됨에 따라 거창군의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을 “거창군 평생학습조례”에서 “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”로 변경함.
- 2)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평생교육”과 “평생교육기관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.

- 3)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추진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4)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이나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및 그 밖에 평생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5)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.
- 6) 평생교육센터의 수행 사업과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및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두는 거창군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.
- 7)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.
- 8)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조례 등 준용 규정을 둠(안 제18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거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,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,

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은 종전의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12명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

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